

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사례



공익침해행위란?
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이익,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HEALTH

건강분야



불량식품 제조·판매

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독·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조·판매하는 행위

관련법 | 식품위생법, 약사법, 학교급식법 등 56개

SAFETY

안전분야



부실 시공

각종 공사 중 불량자재 사용, 무자격자가 건축설계·불법 시공·공사 감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행위

관련법 | 건축법, 주택법,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79개

CONSUMER INTEREST

소비자이익분야



개인정보 무단 유출

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
관련법 | 개인정보보호법, 소비자기본법 등 69개

ENVIRONMENT

환경분야



폐기물 불법 매립

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농지나 공장주변에 불법 매립하는 행위

관련법 | 폐기물관리법,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 61개

FAIR COMPETITION

공정경쟁분야



가격 담합

같은 업종 내 기업들이 상품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한 뒤 시장에 공급하는 행위

관련법 | 공정거래법, 하도급법 등 14개

같이 만들어 가는
가치있는 세상

공익신고





“공익신고”란 무엇인가요?

공익신고란 **공익침해행위**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**공익신고기관**에 신고하는 것입니다.

신고대상

5개 분야, 279개 법률 위반행위



공익신고 기관

- 1 국민권익위원회
- 2 관할 행정·감독기관(정부부처, 지자체 등)
- 3 수사기관
- 4 공사 등 공공단체
- 5 기업의 대표자
- 6 국회의원



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
신고자의 인적사항, 공익침해행위 내용,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**증거를 첨부하여 서식**에 따라 신고합니다.

신고상담

국번없이 110 또는 1398

신고접수

- | 인터넷 |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1398.acrc.go.kr
- | 우편·방문 |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
- | 팩 스 | 044-200-7972
- | 모바일앱 | 부패·공익신고 앱

신고서 기재사항(법 제8조 제1항)

- 1 공익신고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
-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
- 3 공익침해행위 내용
-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



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?

비밀보장

신고자의 동의없이,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

보호조치

-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·행정적·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
-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,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

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

신변보호

공익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,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

책임감면

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·징계,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



공익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?

보상금

공익신고로 국가·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

⇒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



포상금

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

⇒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



구조금

공익신고로 치료·이사·소송·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